

[별표 6] <개정 2005.8.5>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제33조관련)

1. 토목용·조경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 가. 천공기(穿孔機) : 1대 이상(무한궤도식일 것)
 - 나. 굴삭기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다. 로우더(Loader)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라. 운반장비 : 1대 이상(15톤 이상의 트럭)
 - 마. 기술인력 :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 가. 천공기 : 1대 이상(무한궤도식일 것)
 - 나. 굴삭기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다. 로우더 : 1대 이상(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라. 운반장비 : 1대 이상(15톤 이상의 트럭)
 - 마. 석재절단기 :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 바. 기술인력 :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의한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 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채석허가신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채석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